

# 심 사 보 고 서

- 충청북도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 심사보고서

충청북도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383
----------	-----

2016.5.4.(수)  
산업경제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발 의 자 : 이의영 의원 등 7인

나. 발의일자 : 2016년 4월 18일

다. 회부일자 : 2016년 4월 19일

라. 상정일자 : 2016년 4월 26일

(제34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 이의영 의원)

가. 제안이유

○ 우리도의 농수산물식품의 수출진흥 시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농수산물식품 산업의 대외 경쟁력 강화와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운용중인 조례 중 ‘충청북도 농수산물식품 수출진흥협의회’의 기능을 강화하여 실효성 있는 농식품 수출확대 정책발굴과 수출촉진을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농수산물식품 수출진흥협의회 위원 변경 및 기능강화(안 제12조)
  - 위원장을 농정국장에서 행정부지사로 직위격상
  - 수출 유관기관 공조 및 협력체제 강화를 위한 구성원 확대
- 수출확대 방안 발굴을 촉진하기 위한 협의회 운영확대(안 제13조)
  - 협의회 운영을 년 2회에서 연 4회로 확대

3. 검토보고 요지(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 오성일)

- ‘충청북도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도의 농수산물식품의 수출진흥 시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농수산물식품 산업의 대외 경쟁력 강화와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운용중인 조례에 ‘충청북도 농수산물식품 수출진흥협의회’의 기능을 강화하여 실효성 있는 농식품 수출확대 정책발굴과 수출촉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조례 개정은 타당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 음”

5. 토 론 요 지 : “없 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수 의견 요지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충청북도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과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위원장은 충청북도 행정부지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농정국장으로 한다.
- ③ 당연직 위원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장, 농림축산검역본부 청주사무소장, 산림청해외자원협력관실장, aT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충북본부장, 농협중앙회 충북지역본부장, (재)충북지방기업진흥원장, 한국무역협회 충북본부장으로 한다.

제13조제3항 중 “년 2회” 를 “년 4회” 로 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 ~ 제11조(생 략)</p> <p>제12조(협의회 구성) ① (생 략)</p> <p style="padding-left: 20px;">② 위원장은 충청북도 농정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p> <p style="padding-left: 20px;">③ 당연직 위원은 충청북도 원예유통식품과장·유기농산과장, 농협연합마케팅추진단장, aT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충북본부장으로 한다.</p> <p>제13조(협의회 운영) ① ~ ② (생 략)</p> <p style="padding-left: 20px;">③ 협의회는 <u>년 2회</u> 개최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p>	<p>제1조 ~ 제11조(현행과 같음)</p> <p>제12조(협의회 구성) ① (현행과 같음)</p> <p style="padding-left: 20px;">② 위원장은 충청북도 행정부지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농정국장으로 한다.</p> <p style="padding-left: 20px;">③ 당연직 위원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장, 농림축산검역본부 청주사무소장, 산림청 해외자원협력관실장, aT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충북본부장, 농협중앙회 충북지역본부장, (재)충북지방기업진흥원장, 한국무역협회 충북본부장으로 한다.</p> <p>제13조(협의회 운영) ① ~ ②(현행과 같음)</p> <p style="padding-left: 20px;">③ ----- 년 <u>4회</u> ----- ----- -----.</p>

# 관계 법령

##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의 경제, 사회, 문화의 기반인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에게 안전한 농수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농어업인의 소득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이 나아갈 방향과 국가의 정책 방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농수산물“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농산물: 농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수산물: 어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7. “식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사람이 직접 먹거나 마실 수 있는 농수산물

나. 농수산물을 원료로 하는 모든 음식물

제6조(정책 수립·시행의 기본원칙)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정책을 세우고 시행할 때에는 시장 경제 원리를 바탕으로 한 효율성을 추구하되, 농어업과 농어촌의 공익기능을 최대한 고려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을 세울 때에는 지역공동체의 유지, 해당 지역의 농어업·농어촌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